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16

발의연월일: 2022. 8. 18.

발 의 자:김선교·김상훈·박대수

하영제 • 권명호 • 이종배

성일종 • 구자근 • 김석기

조은희 · 안병길 · 태영호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시 공람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지역 내에 설립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전환하여시행 가능하도록 하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제안·지정절차를 삭제하여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고자 함.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인수절차를 개선하며, 사업 시행구역 등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절차 신설 등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함 (안 제17조의2).
-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 · 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9항, 제23조제8항, 제43조의2제4항).
- 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 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안 제24조제2항제4호).
- 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서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5조제1항).
- 마.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군수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함(안 제28조의2제1항).
- 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36조제1항).
- 사. 시장·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토록 규정함(안 제43조의2).
- 아. 관리지역 내 설립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토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함(안 제43조의4제4항 및 제5항).

- 자.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방법을 대통령으로 위임토록 규정함(안 제49조제10항).
- 차.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에 따른 투기수 요 방지를 위한 현금청산 규정을 삭제함(부칙 제3조 및 제4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2조제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3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거주기간"을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으로, "경우"를 "경우(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2제6항"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9항 또는 제23조제8항"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따라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를 "따른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민 공람 및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43조의4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제17조의2제6항"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9항 또는 제23조제8항"으로,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2제4항"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로한다.

- ④ 관리지역에서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시행 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⑤ 관리지역에서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 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 변경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주민합의체가 시행 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9조제10항 중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를 준용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단서 중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유지하거나 동일 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한"으로 한다.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 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 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 행하는 경우"를 "시장・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2021년 2월 4일까지" 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제28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4제4항(시장·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를 "제43조의4제6항(시장·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8조의2, 제43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에서의 사업의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합의체 구성의 변경신고 및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중 연번 241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u><</u> 삭	제>			
시행예정구역 지정) ①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					
등소유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하 "사업시행예정구역"					
이라 한다)의 토지등소유자의 4					
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u>시장·군수등에게 제안하여야</u>					
<u>한다.</u>					
②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					
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과 관련된 자료와 그 밖에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예정구역 및 그 면					
<u>적</u>					
2.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세대수					
3. 사업시행에 따른 건폐율・용					
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③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에게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인정되면 이를 사업시행계획에반영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및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등이 주민에게 공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및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

라 제안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 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 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 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 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 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8 그 밖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에 대한 검토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 공시행자 지정) ①·② (생 략)

<신 설>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 공시행자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

③ (생략)

-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 저 정개발자 지정) ① (생 략)
 -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③ ④ (생 략)
-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
 - ~ ⑧ (생 략)
 - ⑨ 시장·군수등은 제5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거나 제8항에 따라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

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
정개발자 지정) ① (현행과 같
승)
②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
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
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9

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 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① (생략)

-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7 (생 략)
 - ⑧ 시장·군수등은 제1항, 제2 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한다. <후단 신설>

⑨ (생략)

-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략)
 -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⑩ (현행과 같음)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8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
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 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 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 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 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 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 이혼으로 인한 양도 •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 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 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 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 3. (생략)
-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 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 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u>거주기간</u>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상인 경우

1 0 (취케키 가이)
1. ~ 3. (현행과 같음) 4
4.
<u>거주기간</u>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
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
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

5. (생략)

③ (생략)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생략)

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 다)--- 경우(소유자가 피상속 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 5.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세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7조의2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 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2. ~ 5.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고 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 · 군수 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 전 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 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 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 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 1. ~ 4. (생 략)
 - ② (생략)
-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 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 고 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삭 제>

- 2.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9항 또는 제23조제8항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 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 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 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③ (생 략)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저 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신 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14일 이 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 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에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
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
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주민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 재생위원회의 심의(제27조제3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 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제27조제3항 각 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④ (생 략)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제 지역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7조제3항
<u>4</u>
우 관리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
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
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
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 행과 같음)
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지역에서 제23조제1항

<신 설>

④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제2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u>제17</u>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시행 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⑤ 관리지역에서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 변경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주민합의체가 시행 중인 사업이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u>6</u>	 	 	
	 	 	제18

조의2제6항에 따른 고시"는 "제 43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 의 고시"로, "시장·군수등"은 "시·도지사"로, "사업시행예정 구역 지정 고시"는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각각 본다.

-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 ⑨ (생 략)
 - ①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국민 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55조를 준용한다.
-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제2항에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u>제9항 또는 제23조제8항제4</u>
3조의2제4항
<u>"사업시행자의</u>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
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1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에 관한 특례) ① 소규모재개
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군수등 또는 제18조제1
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
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
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
행하는 경우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유지하는 내용으로</u>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
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
시를 한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에 관한 특례) ① <u>시장·군수</u>
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
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가로주
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가 된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u>서 2021년 2</u>월 4일까지 「건축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 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 여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고 시가 있은 날 이전에 분양계약 을 체결하고 제18조 또는 제19 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 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주 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서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 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 여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일 이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 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의 지정・고시 전까지 공동주 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 다.

제4조(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저산정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제4항(시장 •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 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u> 2월 4일까지</u>
세4조(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에 관한 특례) <u>제43</u> 조의4
제6항(시장·군수등 또는 제18
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
비사업에 한정한다)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	
정일은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u>.</u>